

1. 개정이유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한 후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구매할 수 게 되었고, 남은 전력을 전력시장 및 전기판매사업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음. 이에, 개정 법률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남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 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초과하여 남은 경우를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개정(제18 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

2) 입법예고 실시(2026. 1. 14. ~ 2. 27.)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호 중 “못하는”을 “못하거나 남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8조(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) 법 제43조제2항에서 “사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	제18조(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 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이 전기사용자의 수요량에 미치지 <u>못하는</u> 경우	1. ----- ----- ----- <u>못하거나 남는</u> ----- -----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